

2024년도 제3차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제3차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제도개요

□ 목적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672호)
- 중소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기부 고시 제2024-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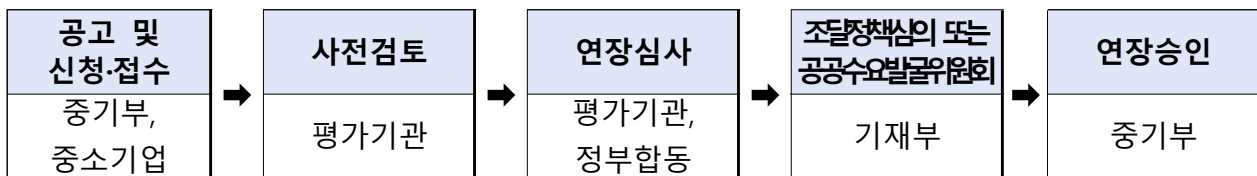
2. 신청대상 및 추진절차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②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유형 I)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 '21.12.24 ~ '24. 12. 23.

□ 추진절차



* 추진주체 :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부합동) 기재부, 중기부, 조달청 및 전문지원기관(혁신제품지원센터)

□ 평가방법

① 사전검토 (10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연장심사 (10월)

- 공공부문 매출액 발생 여부 등 공공성 평가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검토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10월)

- 상정제품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 혁신제품 연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대상 최종확정

④ 지정 및 인증서 발급 (10월)

- 최종연장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유효기간 1년 갱신)

3. 신청 자격 요건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가.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기본 지정기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관련 必)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지정기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혁신제품 관련 必)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 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물품식별번호 기준)

구분	항목	세부내역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R&D 결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물품식별번호 기준)	- 혁신제품 지정제품(물품식별번호) 중 일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4. 신청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 ③~⑦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혁신제품 지정연장(1차연장)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③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 신청서		서식1	필수
④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서식2	필수
⑤	신청자격 증빙자료 (1개 이상 제출 필수)	(3-1) ^{비고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서식3	필수 (해당 양식 1개 이상 선택)
		(3-2) ^{비고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3-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3-4) ^{비고4} 구매확약서 (수요기관 구매확약 공문 또는 수요처의 장 관인이 날인된 구매확약 자료 첨부 必)	서식4	
⑥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혁신장터(ppi.g2b.go.kr) - 혁신제품 전용몰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	필수
⑦	기술입증 자료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서식5	필수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5. 신청방법(1차연장)

□ 공고기간 : '24. 9. 2(월) ~ 9. 23.(월)

□ 신청기간 : '24. 9. 2(월) ~ 9. 23.(월),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구 분	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접수 매뉴얼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문의처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7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00-0711, 0716 (innopro@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서식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기간(1차연장) 신청서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행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기간연장 신청사유	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			해당여부	
	1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2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3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혁신제품 관련)			()	
	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			()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번호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			해당여부	
	1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2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3	혁신제품 지정제품 중 우수조달제품(조달청)으로 지정된 경우 (물품식별번호 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4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3] 납품실적목록

※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격명	수량	금액(원)*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국내/해외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주)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서식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연장타당성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구매확약 수요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확약 희망규격	(규격명) (물품목록번호)	
활용목적	자율기재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명 : (인)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5] 기술입증 자료목록

기술입증 자료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 -)			
신청제품명						
물품식별번호						
목록	연번	구분	인증번호	기술의 명칭	유효기간	발급처
	1	특허	제0000-00호		2020.00.00 ~2040.00.00	특허청
	2					
	3					
	4					
	5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자료(특허 등)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목록을 기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필수)

※ 신청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허위 및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